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67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67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소270827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20. 8. 19.

판결 선고 2020. 9.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소270827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10. 1.까지는"을 "2019. 9. 30.까지는"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62,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B과 관련하여 피고가 꽃장식 대행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월 말일 원고로부터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 4.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17,462,522원을 과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피고가 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1. 2,000,000원, 2018. 10. 22. 1,5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18. 10. 22. 원고에게 남은 과지급 대금 13,962,522원[= 전체 과지급 대금 17,462,522원 - 기상환 금액 (2,000,000원 + 1,500,000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을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이라 한다).

2018. 11. 10.	2,000,000원
2018. 12. 10.	2,000,000원
2019. 1. 10.	2,000,000원
2019. 2. 10.	2,000,000원

2018. 11. 10.	2,000,000원
2019. 3. 10.	2,000,000원
2019. 4. 10.	2,000,000원
2019. 5. 10.	1,962,522원
합계	13,962,522원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작성 이후 2018. 11. 09. 추가로 2,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환'이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환 이후 이 사건 상환계획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 25., 같은 해 3. 25., 같은 해 4.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상환 받아야 할 나머지 과지급 대금 11,962,522원(= 13,962,522원 - 추가 상환한 2,00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존하는 과지급 대금 11,962,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62,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과지급 대금 청구일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환계획서의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환계획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2019. 10. 1.까지는"은 "2019. 9. 30.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한미

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